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0 | 2024.11.11. (2024.11.04~11.1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04~11.10)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약 8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기술 및 제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메타버스 분야 신규 국제표준 36종 제안 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명단공표 관련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외항 운송업자 등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 충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4인)**」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운영·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1/14(목) 안건 심의를 위한 제2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및 <예결위> 등 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금융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13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5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1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1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4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6인)	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5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5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26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2인)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28
•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3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3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33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1인)	3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34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의원 등 11인)	35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의원 등 13인)	37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3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04~11.10) [바로가기](#)

- [에너지·자원]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공개
- [중국] 중국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규정 개정과 시사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9 (2024년 11월 1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 발표 - 2030년까지 핵심 동위원소 자급율 100% 달성 -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후보 3종 이상 발굴 -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수요 · 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2024-11-07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음

최근 노바티스사의 연속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국제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은 '32년까지 29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행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음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4대 전략 9개 추진 과제

전략1 핵심 동위원소 자급체계 마련 ① 국가 차원의 동위원소 중장기 관리 체계 정립 ②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역량 강화	전략2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 ① 혁신 방사성의약품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추진 ② 신약 개발 지원 역량 강화 및 체계화
전략3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① 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 지원 체계화 ② 인프라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 활성화 ③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추진	전략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 지원 ①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② 산업 규제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

과기정통부는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임.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함.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임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임.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산업통상자원부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 발표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국제표준 선점 시동
- 2030년까지 신규 국제표준 36종 개발 제안

2024-11-0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메타버스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메타버스 국제 표준 개발 36종(기반표준 6종, 제품표준 9종, 확산표준 21종), 포럼 구성 및 표준화 기반 마련
√ 국제 협력체계 구축, 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표준 역량 강화

메타버스 표준화 세부 추진 과제표준화
추진 기반
구축**(1) 메타버스 산업 기반 표준개발****① 메타버스 용어 · 개념 등 기반 표준개발**

* 'XR 단말 용어집' 및 '시스템 및 장치 요구사항' 등 6종

② 메타버스를 위한 제품과 플랫폼 표준개발

* 'XR 단말 및 주변기기 참조모델', '플랫폼 요구사항' 등 9종

메타버스
기술
표준화**(2) 메타버스 시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③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시험 · 평가를 위한 표준개발**

* XR 단말 내구성, 성능 등 특성 시험평가 방법 10종

④ 메타버스 시스템 호환성 · 접근성 관련 표준개발

* 단말기, 서비스, 플랫폼 상호운용성 관련 11종

표준화
역량 강화**(3) 메타버스 표준화 역량 강화****⑤ 포럼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 융합 활성화****⑥ 국제표준 기술 교류 강화와 기업 표준개발 지원**

* IEC 국제표준화기구 내 XR기기 분과위 리더십 확보 추진 등

최근 메타버스 기기는 인공지능(AI),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소통하는 공간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혼합현실(MR) 기기의 출시, 눈앞의 사물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R) 안경 형태의 시제품이 공개되는 등 기술이 진화하고 있음.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는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한 조직 신설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발족한 포럼은 디바이스, 플랫폼, 표준개발 분과에서 약 8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기술 및 제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메타버스 분야 신규 국제표준 36종 제안 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음

신규 국제표준 제안 항목은 ‘메타버스 용어’ 등 기반표준 6종, ‘간편 운전 모의훈련 장비’ 등 제품 및 플랫폼 표준 9종, 기기 시험방법 표준 10종, 시스템 호환성 관련 표준 11종 등 총 36종으로 제시되었음. 아울러, 적시에 국제표준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의 지속적 운영, 기업의 표준개발 지원,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의 기반조성 내용도 담고 있음

금융위원회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향후 운영방향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이슈 논의

2024-11-06

금융위원회는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임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대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가상자산위원회」의 구성 취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위원을 최종 선정하였음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어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됨.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임

금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첫 회의인 만큼,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고 밝힘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우리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이 과정에서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음

이어, 향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고 위원 간 의견을 나눴음.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되었음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하였음. 이 밖의 추가 논의과제 발굴 및 논의순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다음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음.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 한편,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	2024-11-05 시행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규제·투자에 관한 사항 및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② 국가바이오위원회의 구성(제4조)

-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③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체·자문단의 설치(제9조)

-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의 설치(제10조)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바이오 분야 관련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11-04 시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5회로 확대하고,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소방용품 및 현장처리물품 관련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1-07 시행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종전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 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대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변경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경우 그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며,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행업자에게 유선 및 온라인으로 갱신 안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05 시행

종전에는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표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였으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전국 등록번호표 제도에 맞추어 앞으로는 등록번호표를 교체하지 않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만 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건설기계의 수출을 위하여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의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수출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4. ~12.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추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명단공표 관련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 공정위 심의·의결 대상 추가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개정 사항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948, 팩스: 044-200-4977)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04. ~12.16.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신설)

- 행안부장관이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5년이 시작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또한,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 추진 근거를 마련함

②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신설 및 중복 표현 정비(안 제2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로부터 10일로 하고, 종전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는 ‘삭제’

③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비기준 일부 정비(안 제51조 별표 11)

- 공단의 분동 보유 기준(3ton →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 포함)을 타 승강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대여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④ 공단의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안 제18조·제21조 별표5)

- 연구·개발 목적으로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단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55조에 따른 공단 ‘추가’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전화: 044-205-4292, 팩스: 044-205-891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06.
~12.16.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12. 00. 공포·시행)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외항 운송업자 등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귀농인 감면 추정대상 기준 신설(안 제3조)

- “농업 외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판단을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정하도록 규정 신설

② 재산세가 면제되는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여부에 관계 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

③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신설 등(안 제13조)

- 임대형기숙사가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일부 규정의 법률 상항에 따른 조문 정비 등

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 등의 범위 조정(안 제13조 제5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실제 매입대상에 맞춰 감면대상 범위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정

⑥ 박물관·미술관 등 감면 추정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의 취득세 추정 사유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폐관신고 또는 등록취소 되는 경우로 명확화

⑦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정비(안 제24조)

-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등을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 현행화

⑧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의2조)

-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비용은 설계비, 공사비 등 내진 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입증 방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에 따라 입증되는 비용으로 규정

⑨ 선박의 감면요건 정비(안 제30조)

- 외항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도 내항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후 30일 내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개선

⑩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35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

-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제도과 (전화: 044-205-3853, 팩스: 044-204-8970)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06.
~12.16.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 ②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 ③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 ④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 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 ⑥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 ⑦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 ⑧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 ⑨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43, 팩스: 044-204-8969)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06.
~12.16.

도심 내 물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자금 충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철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 도시철도 부대사업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②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제도 연장(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매입금액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함

③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의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전화: 044-201-4133, 팩스: 044-201-5596)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07.
~12.17.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자격요건을 현실화하고, 새만금 지역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건축위원회 개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과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개의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제1항 개정)

- 기존 외국인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은 새만금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외투기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
- 사업시행자의 신용, 자기자본 등의 평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②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자격분야 확대 및 개의기준 변경 (안 제52조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개정)

- 새만금지역의 입주 본격화 및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등에 대응하여 새만금 건축위원회 운영 중 발견된 미흡점 개선
- 전문성 제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역할(산하 전문위에서 교통·도시계획 여건 등 종합검토) 수행을 위해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
-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를 '건축'에서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 구성인원, 전문분야 확대에 따라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사례와 같이 심의안건별 참석위원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참여위원을 확정하고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도록 개선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전화: 044-201-3687, 팩스: 044-201-556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11-04 발의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형법」 등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안 제26조의2 신설)

또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승낙을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113조제3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11-05 발의

현행법은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투자한도 및 발행기업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개방적 자금조달과 홍보효과 등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액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여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함.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이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2024-11-07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2항)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11-07 발의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024-11-04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안 제24조제1항제2호)
- ②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안 제24조제1항제3호)
-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130조)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2024-11-05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2024-11-05 발의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4인)

2024-11-05 발의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2024-11-06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8조의 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5조의7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 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안 제77조의3제2항 및 제133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6인)

2024-11-08 발의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 (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 (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 (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024-11-04 발의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종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종과를 완화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11-05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2호의2·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2024-11-04 발의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로 인한 어업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로 인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공유재인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해상풍력산업 지원 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하여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 및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2024-11-06 발의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을 서로 차등하는 요금제(이하 “용도별 차등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금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이하 “누진 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음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전기라는 재화가 소비자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동일(同一)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를 구별하고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전체 국민)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산업용 전기소비자인 전력다소비기업)에게 전기판매를 매개로 부(富)의 이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補助)’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이 존재하므로,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모든 용도의 전기 중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서 독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필수재화에는 도입된 전례가 없는데다가 생활소비자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는 이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전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인이고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또는 여름철·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1인)

2024-11-07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24-11-07 발의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유럽·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주얼리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의 성장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높은 세금은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를 유발시켰고 이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하게 되었으며,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외면이 가속화 되면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얼리분야 제정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4-11-04 발의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체불하거나,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44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4-11-04 발의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4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2024-11-04 발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룩내고자 하는 것임 (안 제59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4-11-05 발의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의 주범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음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음껏 장시간 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근거조차 없음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수십 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음. 실제로 지난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음

포괄임금제의 계속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자 보호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임. 현행법은 이미 ①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2조), ②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법 제58조 제1항·제2항), ③방송·연구개발·금융투자 등 직종에 대한 재량근로제(법 제58조제3항), ④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법 제63조)등 다양한 대안적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대신 적용기간제한·업종제한·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허용은 사용자의 유연근무제도 채택을 가로막고 도리어 노동자 보호장치를 통째로 우회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짜 야근·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똑바로 기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024-11-06 발의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공장노동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국제노동기구(ILO)는 위장된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고용관계와 관련된 판단 지표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를 지난 2006년 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음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주 노동법에 'ABC 테스트'를 직접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ABC 테스트는 사용자에게 ①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지, ②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함.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하여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고,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는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소 종류에 구분 없이 활용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으로 여전히 탄소배출이 높은 부생·추출수소가 국내 유통 수소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소분야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의 생산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미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 수소산업의 자생력 있는 시장체계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생산·활용 전 과정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1인)

2024-11-07 발의

2016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됨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였음. 1년간 두 차례에 걸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향하였음

그런데 과징금이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의 단순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판매했음에도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계산착오, 내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과징금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한 과징을 부과하는 체계를 갖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감축 등을 위해 위반자가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음

이에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2024-11-07 발의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하여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를 포함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② 차별적 처우의 시정, 조사, 조정·중재, 시정명령등의 절차와 내용,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을 신설함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 신설)
- ③ 사용자로 하여금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때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9조의2 신설)
- ④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출산·육아,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의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유별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한편, 위반시 최초 사용시점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9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1인)

2024-11-08 발의

현행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2024-11-04 발의

건설노동시장은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단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적정임금제의 임금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산재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함 (안 제22조제7항·제8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38조의5제1항)
- ③ 공공 건설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38조의5제4항)
- ④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내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명시 의무 또는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국토교통위원회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2024-11-05 발의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조성이 핵심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운영·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외 공공·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7조)**
-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 (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 ③ **공공·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 (안 제67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2024-11-06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달리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11-06 발의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골재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함

한편,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하여 수입의 원인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허가권한을 가진 자의 의지에 반해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의지만으로는 양질의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또한,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암석을 선별·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자원의 순환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골재생산을 위한 암석 등의 수급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현행 규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으나,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
- ②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 중 일부를 골재채취허가법률로 이양하여 허가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및 제34조의3, 제34조의4제2항 신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 ④ **골재 공급원의 고갈 및 축소 등에 따라 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선별·파쇄 암석자원에 대한 골재용으로서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4조의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1/14(목)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11/12(화) 15:00 - 예산안, 법률안 등 상정
	예결산소위	11/14(목) 10:00 - 예산안 등 심사
기재위	예결산소위	11/12(화) 10:00 -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13(수) 10:00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조세소위	11/14(목) 09:30 - 법안 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11/11(월) 10:00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법안, 예산안 등 상정
	예결산소위	11/13(수) 10:00 - 예산안 등 심사
외통위	예결산소위	11/11(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3(수) 10:00 - 예산안, 법률안 등 의결
문체위	전체회의	11/11(월) 14:00 - 예산안 등 상정, 대한체육회 관련 현안질의
	예결산소위	11/15(금) 10:00 - 예산안 등 심사
농해수위	전체회의	11/12(화) 14:00 - 예산안 등 상정, 법률안 상정
	예결산소위	11/13(수) 10:00 - 예산안 등 심사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11/11(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2(화) 14:00 - 예산안 등 의결
복지위	예결산소위	11/13(수)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4(목) 14: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및 청원 상정

환노위	전체회의	11/12(화) 10:00	- 예산안 등 상정
	예결산소위	11/14(목) 10:00	- 예산안 등 심사
국토위	예결산소위	11/11(월) 10:3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3(수) 10: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예결위	전체회의	11/11(월) 10:00	- 2025년도 예산안 *부별심사(경제)
		11/12(화) 10:00	- 2025년도 예산안 *부별심사(경제)
		11/13(수) 10:00	- 2025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
		11/14(목) 10:00	- 2025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1(월) 14:00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이학영·강득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2(화) 07:30	K-콘텐츠 산업 트렌드 및 미래시장 환류방안 모색 포럼	진종오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1/12(화) 14:00	[2024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K-AI의 미래, 국회가 뚫다	주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1/12(화) 16:00	미국대선 결과와 한국정치의 과제	정동영·위성락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3(수) 10:00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 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박찬대·박희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13(수) 10:3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문진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3(수) 14:00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민홍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4(목) 07:30	포스트 바이든시대 미중경제전쟁 속 한국의 대응은?	김태년·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4(목) 13:30	韓美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유용원·강대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4(목) 14:00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 : “패러다임 전환, 상생(相生)”	이헌승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자료집 등	11/15(금) 14:00	공익활동과 법, 현황과 지향점	김한규·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3(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4.10호) 발간	국회사무처	
	11/11(월)	「THE 현안」 제33호(2024-33호) 발간	국회도서관	
	11/13(수)	「금주의 서평」 제703호(2024-44호) 발간		
	11/13(수)	「Data&Law」 2024-12호 발간		
	11/12(화)	2024년 「예산추천」 네 번째 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1/13(수)	「2024년 하반기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11/11(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3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4(월)	「THE 현안」 제32호(2024-32호)	국회도서관	
	1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9호(2024-21호)		
	11/6(수)	「금주의 서평」 제702호(2024-43호)		
	11/5(화)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11/8(금)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04~11.10)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05(화)	에너지·자원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11/05(화)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공개
11/07(목)	중국	중국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규정 개정과 시사점
11/08(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9 (2024년 11월 1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